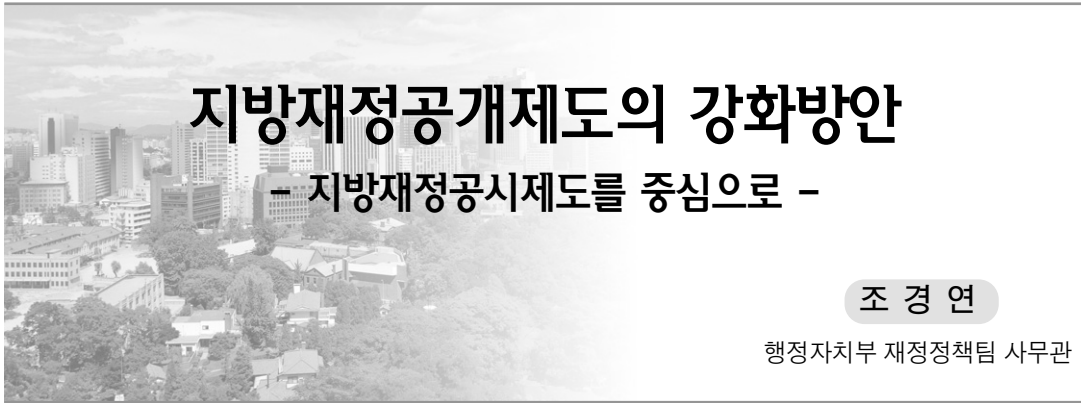




지방재정공개제도의 강화방안

-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

조 경 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사무관

I. 머리말

우리나라는 민선 지방자치를 실시한 10년의 경험과 더불어 '06년도에는 지방재정규모가 100조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재정규모로 볼 때 지방재정규모가 중앙재정을 능가(54대 46)하는 시점에서 중앙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재원을 34%(04년 기준)정도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곧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논리에 부합되며,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낭비성 재정운영은 주민이 내는 세금의 가치(Value for Money) 극대화에도 반하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방재정규모 확충과 더불어 재정분권 및 재정운영의 자율화제도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시스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전신으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를 '94년부터 지방재정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다.

부연 서술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무 현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년 상·하반기에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는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통제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분위기 조성 등 나름대로 순기능을 하여 왔으나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 운영사항을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동종단체 비교 등 구체적인 공개기준이 없고, 공개내용이 자치단체 즉, 공급자 위주의 내용으로 공개함으로서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주민의 이해곤란으로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기능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같은 비판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율 법정율인상('05년도 기준 내국세의 19.24%), 분권교부세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설치 등 지방재정규모를 확충시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게 신장됨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같은 시대적 흐름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한해의 살림살이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와같은 시대적 패러다임변화에 맞게 그간 운영되어온 재정공개제도를 『재정공시제도』로 개선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통해 동종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고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쉽게 공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외의 자료수집·분석, 기본계획수립·의견수렴, 지방재정법개정 등 사전준비과정을 기술하고 '04년도 재정분석 우수단체를 대상으로 '05.12월에 실시한 시범공시운영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06.8월에 시행할 재정공시제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재정공시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I. 재정공시제도 도입준비

1) 재정공시제도 도입관련 자료수집·분석

이와같은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

하기 위한 제도구축의 문제인식을 가지고 '05.1월부터 재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영국·일본 등 외국사례를 검토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의견수렴 및 협의 등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관련 자료수집·분석을 하였다.

2)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국, 일본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에 맞는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나 현행 단식부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등 예산·회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해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공시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제도 도입후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성과공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정공시제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5월부터는 행정자치부장관주재 『정책조정회의』,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 시·도 예산담당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지방재정공시제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3)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이와 아울러 한편으로는 재정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도적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05.8.3 지방재정법을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시내용, 공시방법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3) 지방재정공시 시범운영 추진

'06.8월 재정공시 전면시행에 따른 제도운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공시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여부 등을 분석·보완하고 제도도입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04년도 재정분석 우수단체(22단체 : 16시도, 6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공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 재정공시 시범운영단체 공무원과의 워크숍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05.11월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였다.

III. 지방재정공시 시범운영결과

시범공시개요

- 재정공시 시범운영계획 수립 · 워크숍 : '05.9~10월
- 시범운영기관 재정공시 : '05.11.30~' 06.2월(자치단체 홈페이지)
- 시범운영기관 지정 : 22개 기관(16시도, 6시군구)
 - ※ 6시군구 : 인천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 영월군, 충남 태안군, 경북 구미시

가. 시범운영결과 총평

-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지방분권 ·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는 시스템으로 재정공시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시기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와 재정전문가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 공시내용이 지방채무현황, 민간단체보조금지원현황 등 주민관심사항과 재정운영결과 전반을 공시하므로써
 - 공시주체인 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선거 등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시범운영이 다소 소극적이었음.
-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제도 도입관련 자치단체 · 재정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범운영 및 언론홍보를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으나
 -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재정공시제도에 대한 관심부족 · 정보부족 등 한계를 느끼고 있어 교육 · 워크숍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음
- 따라서, 금년은 재정공시제도 도입의 첫해로서 무리한 성과보다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 앞으로 재정공시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 예산 · 회계제도 발전과 더불어 재정투입대비 성과(OutCome)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연구가 요구됨

나. 주민 등 여론반응

- 긍정적인 면 : 재정운영상황 이해에 도움
 -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연도별 증감상황을 도표와 그래프로 작성되어 재정운영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 재정운영의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 재정공시제도의 재정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기대하고 있음
- 미흡한 면 : 지방채무 등 약점을 부각, 정치적 악용 우려
 - 언론에서는 재정공시 내용의 분석없이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재정운영의 약점만 부각,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으며
 - 세부내용이 단순 개조식 또는 사업별로 유형화되어 있어 구체적인 공시사항에 대한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 향후 발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다. 자치단체 반응

- 긍정적인 면 : 과거의 재정운영결과로 미래의 재정운영 방향을 예측,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도모
 - 재정운영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쉽게 제공하는 제도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의 원년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동종단체 비교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이미지 개선 등 지역특성을 부각시키는 기회를 제공함
- 미흡한 면 : 채무현황 등 약점만 부각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와 재정투입대비 재정운영 성과가 미반영
 - 채무현황,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언론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자치단체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 품목별예산제도 · 단식부기회계제도의 한계로 인한 지방재정 투입대비 지역경제 등에 파급되는 성과산출(OutCome)이 어려움이 있음

라. 잘된사례

- 최초의 공식적인 재정공시 공간 구축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Pop-Up창과 배너(Banner)를 활용, 상시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정보 제공방법으로 개선되었음
- 주민 관심사항 위주의 공시로 주민 알권리 충족 기여
 - 지자체간 비교사항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 알기 쉬운 내용과 자치단체 스스로 공시하는 형태변화를 유도하였고
 - 각종 재정운영결과를 도표 및 그래프 활용, 제공하여 주민 이해도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됨
-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공시 항목 선정, 알기쉽게 공시
 -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 등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관심도가 제고되었으며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감도와 사업개요, 실적, 사업추진 전·후 사진을 제시하여 일체감을 조성함

마. 발전방안

- 특수공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특수공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나 시범운영결과 특수공시내용 선정절차,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 재정공시 운영계획 수립시 특수공시 절차, 방법 등 작성기준에 마련함
- 공시방법 다양화로 실효성 제고
 - 공시내용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담스런 제도로 인식됨에 따라 홈페이지에만 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도가 미흡하나
 - 이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방송·언론브리핑, 자치단체 홍보지 발간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공시방법을 권고하고 이를 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임
- 공시내용작성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시범공시결과 지방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에서 관리하는 공채발행액까지 포함하고 있

- 어 과도한 채무운영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 지방채무현황 공시항목을 개선하여 지역개발기금 공채는 제외함
- 업무추진비 및 민간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등은 제도 취지상 전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나 사업별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고 내용이 방대하여 집행내역 작성에 효율성이 저해되므로
- 집행내역을 월별·사업별 등으로 유형화하여 공시토록 하고, 개별적인 공개는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 공개,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의 효율성을 도모함

IV.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운영방안

1. 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 내용적 범위 : 재정분야에 한정
 - ※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충족 및 복지증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음. 따라서 「재정분야」란 세입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출에 관한사항 뿐만아니라 재정운영을 통한 지방재정목표의 구체적인 달성내용을 포함
- 절차적 범위 : 재정운영결과에 중점
- 시간적 범위 : 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기준(다만,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이전 실적치 포함)
- 재정공시는 공개 등과 유사한 개념이나 도입근거, 내용 및 특징이 서로 다름
 - 국내 개별법령 등에 의한 운영사례

구 분	고시·공고	행정서비스헌장	재정공개	재정공시
근 거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제17811호)	헌장제정지침 (대통령훈령제70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지방재정법 개정 제60조
도 입 목 적	사실의 공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	주민자율통제 활성화 재정의 책임성 확보

주요 내용	관보 또는 공보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제공방법, 절차 등을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약속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예산, 결산)을 알려주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등의 평가·감사결과 등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공적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기쉽게 알려주는 제도
특징	• 공고형식 • 일방적	•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약속	• 임의적, 일방적, 일회성 • 내용 복잡, 주민이해 곤란	• 객관성, 공정성, 공시 결과 환류 • 주민관심사항을 알기쉽게 공시

2. 기본방향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알기쉽게** 제공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도모

-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기준·절차·방법을 정하여,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을 방지하여 책임재정운영 도모
- 공시방법을 다각화하여 자율적인 주민통제기능 강화
 -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서식·그래프를 활용, 압축·가공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시·군정지 등) 공시함으로서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
- 현 단계에서는 주민관심사항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 장기적으로는 재정성과공시로 전환
 - 주민관심사항 등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확정하고,
 - 공시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므로 재정운영분야 한정 시행 후, 사업별예산제도 등과 연계, 재정성과 공시로 확대
 - 재정운영결과 공시를 통한 미래서비스 수준 개선에 중점, 서비스의 제공을 약속하고 공표하는 행정서비스현장제와 구별

- 다만, 중앙정부 등에 의한 감사결과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높은 삶의질을 나타내는 재정 운영 결과 등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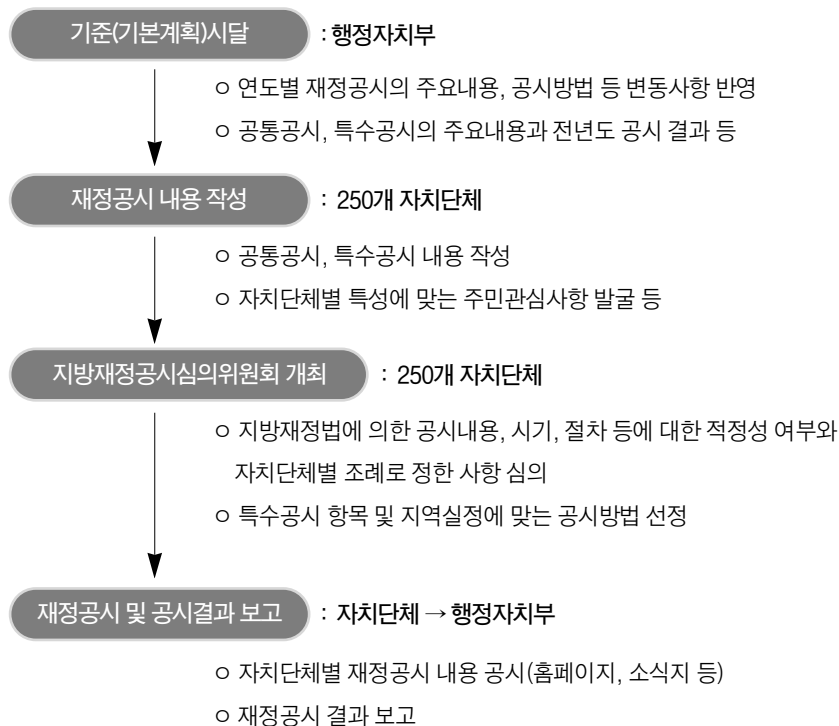
3.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 · 운영

가. 재정공시의 개요

- 공시주체 : 250개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공시 시행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후, 공시
- 공시의 구분과 시기
 -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 위원회에서 결정
 - 공시의 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매년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 발생시 수시로 실시
 -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 · 사용한 경우 등
- 공시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시청율, 구독율, 접근성 등을 종합적 고려 최선의 수단과 방법 선택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 신문, TV(지역방송, 유선), 시 · 군정지(반상회보) , 라디오 등
 - 주민접촉이 많은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에 관련 공시자료 비치
 - 시책홍보를 위한 주민간담회, 정책 토론회등에서 필요시 홍보용 책자, 리후렛, 브로슈어 등 활용
 - 재정공시자료의 연속성 유지
 - 홈페이지를 활용한 재정공시는 다음연도 공시시까지(1년) 계속 공시하여 연속성 유지
- 재정공시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 · 보급하겠습니다.
 - ○○경로당에 안마기구를 구입 · 제공하겠습니다.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 우리지역에서는 ○○정부정책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있습니다.
- 국가기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재정공시제도의 추진체계



2006지방재정공시결과와 활용

- 재정분석지표 활용, 자치단체별 불성실 공시여부 등 재정공시결과 분석
- 재정고 등에 250개 자치단체별 재정공시결과를 '하이퍼링크', 정보 제공

공시제도 도입후 달라지는 점

□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

관련법령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공시 - 매년 8월 재정공시(정기공시) ※ 공개제도에 의한 상(2월) · 하반기(7월) 구분 없음 - 재정공시 수요발생시(수시공시)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24조 예산의 고시 ○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의 고시

※ 지방자치법에 의한 예 · 결산 고시는 지방재정공시와 별개로 운영



□ 지방재정공개제도 운영

관련법령	주요내용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법(구) 제118조의3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 매년 상반기(예산), 하반기(결산)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24조 예산의 고시 ○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의 고시

2. 재정공시의 내용

가. 공통공시

◆ 지방재정의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채권 · 채무현황 등 지방재정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할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함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공통공시의 재정운영결과는 총량적인 재정운영결과

▶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08년부터 공시), ▶ 지방 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07년도부터 공시)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주요 재정운영결과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주민관심사항

▶ 재정분석 · 진단 결과 ▶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채무현황, ▶ 행사 · 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비율 등

□ 공통공시 작성방법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 자치단체 결산서를 중심으로 작성,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
- 분야별 공시자료는 5개년간 증감상황을 그래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쉽게 이해
예) 세입 · 세출현황, 채권 · 채무현황, 기금운용현황 등

○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재정분석결과는 전 지표에 대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점수를 제시해 당해단체와 비교
가 가능하도록 공시
- 주민관심항목은 당해연도 집행현황과 5개년간 증감상황을 도표, 그래프 등을 활용 주민
의 이해도 제고

예) 업무추진비 · 지방채무 · 행사축제경비 ·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수의계약실적, 연말지출비율 등

○ 주민관심항목의 세부 집행내역 공시

- 업무추진비 · 행사축제경비 집행내역 등 세부집행내역 공시는 부서별 · 사업별로 산재되어 자치단체 유형별로 자료의 분량이 많아 자료작성 · 관리에 어려움과 업무의 효율성이 미흡

- 집행내역을 월별·사업별 등으로 유형화하여 공시하되 제도의 근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
- 구체적인 집행내역 공개요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토록 응통성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의 업무부담경감

나. 특수공시

◆ 특수공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관심사항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내용은『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운영방법

- 지역의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시
- 공시건수는 자치단체 자율로 하되 **최소 5건정도 공시**
- 특수공시의 절차와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특수공시사항(예시)

-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지역 유치사업의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 등 추진실적
-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 BIO산업단지 유치 관련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상황
- 지역 특수 주거여건인 달동네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개선 관련 주민관심사항
-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투자 등 기타 당면 주요 지역현안사업 추진실적

□ 특수공시 기준과 절차

- 대상사업 선정기준
 -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으로 하되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이나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

- 주민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 주민의 수혜가 있는 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공시파급효과가 큰 사업
- 대상사업 위원회 상정
 - 위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시대상 건수 대비 3배 수 정도 선정, 위원회에 상정하되, 공시건수,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내용 공시자료 작성
 -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추진상황, 사업효과 등을 도표,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주민이 알기쉽게 작성

3.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
 -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위원회구성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칭)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참고로 지방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제정·운영
 -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
 - 위원회는 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은 가급적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하되, 타위원회와 통합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단체장 등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위원회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내용 등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심의
 - 기타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사항

4. 재정공시의 실효성 제고

- 재정공시자료 활용의 극대화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결과 보고
 - 공시일시 · 방법 · 내용 · 위원회운영 실적 등 그 결과를 공시후 10일이내에 시 ·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보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 재정공시결과 보고방법
 - 별첨서식에 의거 엑셀로 작성, CD 또는 파일로 작성 제출
 - 재정공시결과 비교공시
 - 행정자치부 『재정고』 또는 『e-호조』에 주요지표분석 비교공시를 통해 자치단체별 상호 학습 및 주민 통제기능 활성화 도모
 - 지방재정정책 · 통계자료 활용
 - 재정공시결과를 종합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현황(가칭)』발간, 지방재정 정책자료로 활용
- 재정공시결과 평가
 - 지방재정분석지표에 반영 · 평가
 - 공시방법 · 내용 · 특수공시사항 · 위원회운영상황 등 재정분석정규지표로 개발, 매년 평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 자치단체에서 보고한 재정공시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분석시(9~11월) 평가
 - 공시의 실효성 제고시책에 대해 가점부여
 - 공시방법의 다양화, 적극성 등을 평가점수에 가점부여

가점부여방안

- 공시방법의 다양화, 적극성여부
 - 재정공시 공보지 · 브로슈어 제작 등 상시성있는 공시방안
- 수요자의 접근도 용이성 여부
 - 홈페이지 별도공간 마련, 언론브리핑, 주민간담회 등

- 불성실 재정공시단체 조치
 - 자치단체 재정공시결과보고서를 재정분석시 평가하여 감점조치

- 불성실 공시(미이행)시 행정자치부에서 재공시 권고 및 공개
 - 자치단체결산서 등을 검토 허위·과장 등 불성실한 사례와 미이행시 재권고, 공개(지방재정법시행령제72조)
- 공시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통한 시정
 - ※ 주민감사청구 요건 : 시·도 500명 이내,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이내, 시·군·자치구 200명 이내의

V. 맺는말

모두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지방재정규모가 100조원시대로 진입하고 지방재정 사용액이 국가재정을 능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가재정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나 세금을 직접 납부하고 있는 지역주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에 따라 주민의 삶의 가치와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지방재정 규모의 팽창,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납세자인 지역주민들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 결과를 궁금해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엄격한 책임성·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05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정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지역에 맞는 계약제도 혁신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장화 제도와 재정분석·진단제도의 혁신, 재정공시제도 도입, 수익계약내역 공개 등 책임성·투명성확보 제도 등이다.

이와같은 재정관리제도가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을 책임성있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릇에 담아내고자 하는 제도가 재정공시제도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05년도 재정공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공시내용이 단체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나 이는 그 만큼 시너지 효과도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으로 재정공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여 제도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공개제도』와 『공시제도』 내용 비교

【현 행】

	상반기(2월)	하반기(7월)
재정 공개	▶재정운영방침 ▶재정여건 등 재정운영 계획	▶전년도 결산개황 ▶세입 · 세출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결과



【개 선】

재정 공시	하반기(8월)
공통 공시	① 재정공시 결과 (총괄) ② 재정분석 · 진단결과 ③ 감사원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④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 ⑤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공시내용
특수 공시	① 노인치매병원 유치 등 핵심 지역숙원사업 또는 특수 유치사업의 국비 · 지방비 등 재원확보 및 집행상태와 추진실적 ②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재정지원결과 전년대비 피해축소 등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③ BIO산업단지 유치관련 국비 등 재원확보 및 분양실적 등 지역전략산업추진 실적
수시 공시	① 실행예산 편성,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총당 · 사용한 경우 등 내용

『지방재정공시』 작성 예시

1. 공통공시

□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구(명:A)	당해연도현재액(B)				1인당채무액 (천원:B/A)
		계(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금년도 발생액	금년도소멸액	
지방채무현황	1,450,750	722,584	761,781	90,565	129,762	498
실질채무현황	1,450,750	569,307	608,504	90,565	129,762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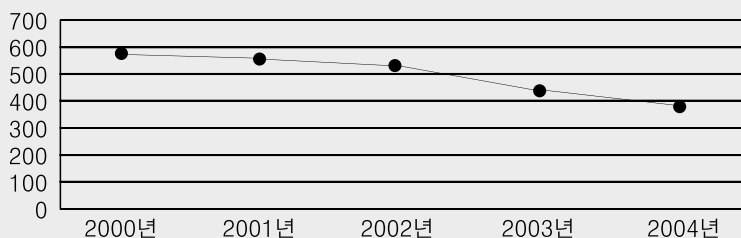
※ 지방채무현황에는 채무부담행위액 포함,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미포함 됨
 실질채무는 2003년 이후 국비부담분(153,277백만원)을 제외한 시비상환 채무액임.

● 연도별 실질채무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채무현황	실질채무	인구수	1인당 실질 채무액(천원)
연 도 별	2000	802,521	802,521	1,390,510	577
	2001	808,247	808,247	1,408,809	573
	2002	769,805	769,805	1,424,844	540
	2003	761,781	761,781	1,438,778	423
	2004	722,584	722,584	1,450,750	392

주민 1인당 실질채무 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 율 (B/A×100%)
'04년도 행사·축제경비	1,210,308	4,961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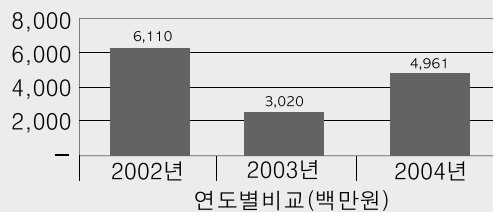
※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금, 행사관련시설비의 결산결과임

● 연도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세출결산액	1,078,179	1,274,352	1,210,308
행사·축제경비	6,110	3,020	4,961
비 율(%)	0.57%	0.24%	0.40%

연도별 행사·축제경비집행 현황



☞ '04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집행내역 : 별지작성

2. 특수공시

□ 문화예술진흥사업

-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시설물 확충, 문화유적 복원·관리와 공연 등 각종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00년~'04년(5년간)기간중 건립된 주요문화시설은 ○○문화예술의전당,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건립등이며 ○○서원 복원을 '01년에 완료하였으며 ○○산성 복원·정비사업은 '07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으로 '04년말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 각종 문화시설물의 운영 및 예술활동 지원경비는 연평균 약19.2%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연도별 증감현황 ●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7,581	31,539	40,231	57,705	40,893
시설투자비	11,825	16,157	19,491	33,932	10,039
운영비등	15,756	15,382	20,740	23,773	30,854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